

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3년 09월 14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  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담당자 : 이은선 문의전화 : 033-560-2701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이 *열 1961-06-05	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	주민등록
유 *나 1997-02-23	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	주민등록
유 *정 1994-01-20	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	주민등록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3년 09월 04일

정선읍장 인

